

부속서 II

기본농산물 관련 대한민국에 대한 노르웨이의 양허

노르웨이는 제4행에 기재된 대로 대한민국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2000년 WTO 기반한 수준으로부터 관세 철폐 또는 감축을 부여한다.

별도 관세율(종량세) : 부호 없는 것은 1kg당, H 부호는 100kg당, S 부호는 1개당 부과되는 노르웨이 크루네

노르웨이 HS세번	상품 설명	가격에 따른 의무 관세율	별도 의무 관세율	대한민국 양허세율
1	2	3a	3b	4
ex '01.01	말, 당나귀, 노새와 버새			
	- 번식용의 것			
01.01.1090	-- 기타	0		0
	- 기타			
01.01.9080	-- 당나귀, 노새와 버새	0		0
ex 01.06	기타의 산동물			
	- 포유동물			
01.06.1100	-- 영장류	0		0
01.06.1200	-- 고래,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0		0
	-- 기타			
	---- 기타			
01.06.1991	---- 토끼	0		0
01.06.1992	---- 모피를 가지고있는 동물 (다른 곳에서 언급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0		0
01.06.1999	---- 기타	0		0
01.06.2000	-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	0		0
	- 조류			
01.06.3100	-- 맹금류	0		0
01.06.3200	-- 앵무류(패로프류, 파라키트류, 금강앵무류, 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0		0
	-- 기타			
01.06.3910	---- 꿩		0.60	0
	---- 기타			
01.06.3991	---- 타조	0		0
01.06.3992	---- 비둘기	0		0
01.06.3999	---- 기타	0		0
01.06.9000	- 기타	0		0
ex 02.08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 에 한한다)			
02.08.2000	- 개구리 다리	363.0%	24.64	0
05.04.0000	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 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0		0
ex 05.06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 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 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 한 것]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5.06.1000	- 골소와 뼈(산처리한 것에 한한다)	0		0
	- 기타			
05.06.9090	-- 기타	0		0

노르웨이 HS세번	상품 설명	가격에 따른 의무 관세율	별도 의무 관세율	대한민국 양허세율
1	2	3a	3b	4
ex 05.11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05.11.1000	- 소의 정액 - 기타 -- 어류, 갑각류, 연체 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의 생산품 및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 기타(식용생산품 제외)	0		0
05.11.9191	----- 어류의 웨이스트(산업용 어류)	0	0	0
05.11.9193	----- 기타 어류의 웨이스트 -- 기타 ---- 혈액 파우더(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0	0	0
05.11.9921	----- 기타 ---- 육과 혈액		0.36	0
05.11.9940	----- 기타 ---- 기타 ----- 기타		0.36	0
05.11.9991	----- 면양과 산양의 정액	0		0
05.11.9992	----- 동물의 정액(양과 염소의 것을 제외한다)	0		0
05.11.9993	----- 소의 수정란	0		0
05.11.9994	----- 양과 염소의 수정란	0		0
05.11.9995	----- 기타 동물의 수정란	0		0
05.11.9998	----- 기타	0		0
06.01	인경, 괴경, 괴근, 구경 및 근경으로서 휴면상태의 것, 경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붙어 있는 것과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제1212호의 뿌리를 제외한다)			
06.01.1001	- 인경, 괴경, 괴근, 구경 및 근경으로서 휴면상태의 -- 원예목적의 인경과 괴경	0.1%		0
06.01.1002	원예목적	0.1%		0
06.01.1009	-- 기타	0.1%		0
06.01.2000	- 인경, 괴경, 괴근, 구경 및 근경으로서 경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붙어 있는 것과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	0.4%	0,01 S	0
ex 06.02	기타의 산 식물(뿌리를 포함한다), 삼수, 접수, 및 버섯의 종균			
06.02.1010	- 뿌리가 없는 삼수와 접수 -- 원예목적의 뿌리가 없거나 원예목적의 삼수 ---- 녹색식물의 것(12월15일부터 4월30일 까지) ---- 기타	0.5%		0
06.02.1021	---- 베고니아(모든 종류), 클레로덴더룸, 포인세티아, 포인세티아 푸르체리마, 후크샤, 불상화, 칼랑코에, 매다는데 사용하는 피튜니아(피튜니아 종, 피튜니아 애킨시아나)	51.0%	0,69 S	10%
06.02.1022	---- 세인트폴리아, 스카이폴라가와 스트렘토카르프스	51.0%	0,69 S	10%
06.02.1023	---- 국화(그랜드프로라)와 국화(모라플로리움) (4월1일부터 10월15일 까지)	51.0%	0,69 S	10%
06.02.1024	---- 양아욱(제라늄)	51.0%	0,69 S	10%
06.02.1029	---- 기타 -- 기타 뿌리가 없는 삼수(접수를 포함한다)	51.0%	0,69 S	10%
06.02.1091	---- 기타 뿌리가 없는 삼수	0.5%		0

노르웨이 HS세번	상품 설명	가격에 따른 의무 관세율	별도 의무 관세율	대한민국 양허세율
1	2	3a	3b	4
06.02.1092	---- 접수	0.5%		0
06.02.2000	- 수목 및 관목(식용의 과실 또는 견과류의 것으로서 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철쭉속의 식물 및 진달래(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진달래종(실내진달래) ---- 기타		0.30	0
06.02.3013	----- 12월24일부터 11월14일까지	17.0%	1,87 S	10%
06.02.3090	-- 기타 - 장미(접목한 것인지의 여부 불문)		0.03	0
06.02.4002	-- 지경	64.0%	4,36 S	10%
06.02.4003	-- 소매용으로 포장되지 않은 뿌리가 절단된 것	64.0%	4,36 S	10%
06.02.4004	-- 어떠한 종류의 배양배지도 없고 뿌리가 들어난 장미 (소매용으로 포장되지 않은것) - 기타	64.0%	4,36 S	10%
06.02.9020	-- 지경 -- 기타 ---- 둥글게 한 뿌리 또는 기타 배양배지	1.0%		0
06.02.9030	----- 회양목, 용혈수, 동백, 남양삼목, 서양호랑가시나무, 월계수, 칼미아, 목련속나무, 종려나무, 하마메리스, 식나무, 피에리스속, 피리칸다, ----- 수목 및 관목(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과 초본식물을 제외한 다년생의 묘목	1.0%		0
06.02.9041	----- 수목 및 관목(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	1.0%		0
06.02.9042	----- 초본식물을 제외한 다년생의 묘목 ----- 초본식물	1.0%		0
06.02.9050	----- 녹색분화류(12월15일부터 4월30일 까지) 및 혼합된 식물류의 일부분으로 수입된 것 ----- 기타 ----- 녹색분화류(5월1일부터 12월14일 까지)	1.0%		0
06.02.9062	아스플레니움, 베고니아, 클로로피텀, 사철나무, 팔손이나마, 두릅, 인도고무나무, 몬스테라, 필론덴드론, 라데마체라, 스테레오스페리움, 상고니움, 페츠헤데라 및 혼합된 식물류의 일부분으로 수입된 것	75.0%	5,11 S	10%
06.02.9063	----- 기타 및 혼합된 식물류의 일부분으로 수입된 것 ----- 분화류 아게라툼, 아그리랜더움, 나무쑥갓, 리갈베고니아, 베고니아 엘라티오르, 동계성베고니아, 베고니아 섀파플로렌스, 알뿌리베고니아, 가막사리, 브라키코메, 과꽃, 클레로덴더움, 시클라멘, 달리아, 모든 종류의 국화속(크린세시움 막시미움/레우칸더움 막시미움 제외), 패랭이꽃, 포인세티아, 포인세티아 푸르체리마, 후크샤, 거베라, 불상화, 수국, 봉선화, 칼랑코에, 로벨리아, 어리섬, 펠라르고늄, (모든 종), 피튜니아(모든 종), 프리물라, 프리물라아카우리스, 세인트폴리아, 스카이볼라가, 백묘국, 야생백묘국, 천수국, 금련화, 버베나, 제비꽃과 백일홍 및 혼합된 식물류의 일부분으로 수입된 것	75.0%	5,11 S	10%
06.02.9066	----- 기타 및 혼합된 식물류의 일부분으로 수입된 것 ----- 뿌리가 절단된 어린 식물	75.0%	5,11 S	10%

노르웨이 HS세번	상품 설명	가격에 따른 의무 관세율	별도 의무 관세율	대한민국 양허세율
1	2	3a	3b	4
06.02.9067	----- 베고니아(모든 종류), 클레로덴더룸, 모 든 종류의 국화속(크린세시움 막시미움/레우칸더 룸 막시미움 제외), 시클라멘, 포인세티아, 후크 샤, 불상화, 칼랑코에, 펠라르고늄, 피튜니아(파 튜니아종, 피튜니아 애킨시아나), 세인트폴리아, 스카이폴라가. 글록시니아	75.0%	5,11 S	10%
06.02.9068	----- 기타	75.0%	5,11 S	10%
06.02.9069	----- 기타	75.0%	5,11 S	10%
	----- 기타			
06.02.9079	----- 기타	75.0%	5,11 S	10%
06.02.9080	--- 둥글게 한 뿌리가 없는 것 또는 기타 배양배	1.0%		0
ex 06.03	질화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 기 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신선한 것 아네모네, 금작화, 미모사, 난초과, 미나리아제비속, 고 광나무속관목, 아그리랜더룸과 나무썩갓(11월1일 - 4 월30일), 국화(그랜디프로라)와 국화(모라플로리 움)(12월15일 - 3월31일), 카네이션(11월1일 - 5월15 일), 프리지어(12월1일 - 3월31일), 로사(11월1일 - 3 월31일), 튜립(5월1일 - 5월31일)			
06.03.1011	--- 아네모네, 금작화, 미모사, 난초과, 미나리아 제비속과 고광나무속관목(부케나 이와 유사한 혼 합물의 일부분으로 수입될때)		0.60	0
06.03.1012	아그리랜더룸, 나무썩갓(11월1일 - 4월30일), 국 화(그랜디프로라)와 국화(모라플로리움)(12월15 일 - 3월31일), 카네이션(11월1일 - 5월15일), 프리지어(12월1일 - 3월31일), 로사(11월1일 - 3 월31일), 튜립(5월1일 - 5월31일)(부케나 이와유 사한 후합물의 일부분으로 수입될때)		0.60	0
	-- 기타			
06.03.1091	성모초, 안수리움, 애스터, 애스틸베, 센토레아, 수염 패랭이꽃, 카네이션(5월16일 - 10월30일), 거베라, 글 라디올러스, 라시루스, 리아트리스, 피소스테기아, 프 로테아, 스카비오사, 세뽀, 솔리다고, 솔리다스타, 스트 레리지어, 트라첼리움과 백일홍(부케나 이와 유사한 혼 합물의 일부분으로 수입될때)	249.0%	4,07 S	0
	---- 기타			
06.03.1098	---- 프리지어(4월1일부터 11월30일 까지), 아이리 스, 리모니움, 스타틱서, 메피올라와 수선화(부케나 이 와 유사한 혼합물의 일부분으로 수입될때)	249.0%	4,07 S	10%
06.03.1099	---- 기타, 부케나 이와 유사한 혼합물의 일부분 으로 수입될때	249.0%	4,07 S	10%
06.03.9000	- 기타		0.60	0
06.04	식물의 잎, 가지 및 기타의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에 한한다)과 풀, 이끼 및 지의(신선한 것 과 건조,염색,표백,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 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6.04.1000	- 이끼와 지의 - 기타 -- 신선한 것	1.2%		0

노르웨이 HS세번	상품 설명	가격에 따른 의무 관세율	별도 의무 관세율	대한민국 양허세율
1	2	3a	3b	4
06.04.9110	---- 공작고사리류와 아스파라거스(6월1일부터 10월31일 까지) ---- 기타	67.0%		0
06.04.9191	----- 공작고사리류와 아스파라거스(11월1일부터 5월31일 까지)		0.12	0
06.04.9192	----- 크리스마스나무		0.12	0
06.04.9199	----- 기타		0.12	0
06.04.9900	-- 기타	3.9%		0
ex 07.02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2.0011	- 11월1일부터 5월9일 까지	0		0
07.02.0040	- 10월15일부터 10월31일 까지		1.60	0
ex 07.03	양파,쪽파,마늘,리크와 기타파속의 채소(신선 또 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3.2000	- 마늘		0.03	0
ex 07.04	양배추,꽃양배추,구경양배추,케일 기타 이와 유사 한 배추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꽃양배추 및 결구된 브로콜리 -- 꽃양배추			
07.04.1031	---- 10월15일부터 11월30일 까지		0.18	0
07.04.1041	---- 12월1일부터 5월31일 까지	0		0
	- 방울다다기 양배추			
07.04.2020	-- 6월1일부터 9월20일 까지 - 기타		0.24	0
	-- 흰 양배추			
07.04.9030	---- 8월1일부터 9월30일 -- 붉은 양배추		0.05	0
07.04.9050	---- 8월1일부터 9월30일		0.05	0
07.04.9060	-- 배추 -- 기타		0.64	0
07.04.9093	---- 사보이양배추(12월1일부터 6월30일 까지)	219.0%	9.16	0
07.04.9095	---- 컬리 케일(12월1일부터 7월31일 까지)	219.0%	9.16	0
07.04.9099	---- 기타	219.0%	9.16	0
ex 07.05	상추(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리(시커리엄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상추(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리(시커리엄속)(신 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결구상추 ---- 아이스버그상추			
07.05.1130	----- 12월1일부터 2월28/29일 ---- 기타	0		0
07.05.1170	----- 12월1일부터 2월28/29일 - 치커리	0		0
	-- 윌트루우프치커리(시코니엄-인티버스변종, 포 리오섬)			
07.05.2110	---- 4월1일부터 11월30일 까지		0.24	0
07.05.2190	---- 12월1일부터 3월31일 까지 -- 기타	0		0
07.05.2990	---- 12월1일부터 3월31일 까지	242.0%	17.40	0

노르웨이 HS세번	상품 설명	가격에 따른 의무 관세율	별도 의무 관세율	대한민국 양허세율
1	2	3a	3b	4
ex 07.06	당근, 순무, 셀러드용 사탕무뿌리, 선모, 셀러리악, 무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당근과 순무			
07.06.1030	-- 순무	63.0%	3.14	0
07.06.9099	-- 기타	230.0%	7.93	0
ex 07.07	오이류(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오이			
07.07.0020	-- 11월1일부터 11월30일 까지		0.60	0
07.07.0030	-- 12월1일부터 3월9일 까지	0		0
ex 07.08	채두류(꼬투리 유무를 불문하여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콩(비그나종, 파세러스종)			
07.08.2009	-- 기타	50.0%	5.31	0
07.08.9000	-- 기타 채두류		0.12	0
ex 07.09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구상의 양영경귀			
07.09.1010	-- 6월1일부터 11월30일 까지		0.08	0
07.09.1090	-- 12월1일부터 5월31일 까지	0		0
	- 아스파라거스			
07.09.2010	-- 5월1일부터 11월14일 까지		0.08	0
07.09.2090	-- 11월15일부터 4월30일 까지	0		0
07.09.3000	- 가지(에그플랜트)		0.24	0
	- 버섯과 송로			
07.09.5100	--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0.30	0
07.09.5200	-- 송로		0.24	0
07.09.5900	-- 기타		0.30	0
	- 고추류(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 단고추(캐프시컴 에뉴엄 변종, 에뉴엄)			
07.09.6010	---- 6월1일부터 11월30일 까지		0.24	0
07.09.6020	---- 12월1일부터 5월31일 까지		0.12	0
07.09.6090	-- 기타	0		0
	- 시금치류			
07.09.7020	-- 10월1일부터 4월30일 까지		0.24	0
	- 기타			
07.09.9010	-- 올리브		0.09	0
07.09.9020	-- 케이퍼		0.60	0
	-- 스위트콘			
07.09.9050	---- 기타	0		0
	-- 기타			
07.09.9091	---- 주키니	203.0%	19.28	0
07.09.9099	---- 기타	203.0%	19.28	0
ex 07.10	냉동채소(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찌서 조리한 것에 한한다) - 채두류(꼬투리 유무를 불문한다) -- 콩(비그나종, 파세러스종)			
07.10.2209	---- 기타	216.0%	12.07	0
07.10.2900	-- 기타		0.24	0

노르웨이 HS세번	상품 설명	가격에 따른 의무 관세율	별도 의무 관세율	대한민국 양허세율
1	2	3a	3b	4
07.10.3000	- 시금치류 - 기타 채소	139.0%	13.94	0
07.10.8010	--- 아스파라거스와 구상의 양영경귀		0.15	0
07.10.8040	--- 버섯 --- 기타		0.60	0
07.10.8094	---- 결구된 브루콜리	219.0%	8.23	0
07.10.8095	---- 단고추(캐프시컴 에뉴엄 변종, 에뉴엄)	219.0%	8.23	0
ex. 07.11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유황가스, 염수, 유향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올리브			
07.11.2010	--- 소금에 절인것		0.09	0
07.11.2090	--- 기타 - 케이퍼		0.18	0
07.11.3010	--- 소금에 절인것		0.06	0
07.11.3090	--- 기타 - 버섯과 송로		0.60	0
07.11.5100	---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106.0%	2.98	10%
07.11.5900	--- 기타	106.0%	2.98	10%
ex 07.12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07.12.2000	- 양파 - 버섯, 목이버섯(아우리쿨라리아종), 젤리균류(트레멜라종) 및 송로	209.0%	12.38	0
07.12.3100	---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0.06	0
07.12.3200	--- 목이버섯(아유리쿨라리아종)		0.06	0
07.12.3300	--- 젤리균류(트레멜라종) --- 기타		0.06	0
07.12.3901	---- 송로		0.06	0
07.12.3909	---- 기타		0.06	0
07.12.9020	- 기타 채소 및 채소류의 혼합물 --- 마늘 --- 스위트 콘		0.03	0
07.12.9040	---- 기타 --- 기타	0		0
07.12.9091	---- 토마토	209.0%	12.38	0
07.12.9092	---- 당근	209.0%	12.38	0
07.12.9099	---- 기타(채소류의 혼합물을 포함)	209.0%	12.38	0
ex 07.13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쪄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7.13.1000	- 완두(피섬새티범) - 이집트콩(가반조스)	260.0%	2.51	0
07.13.2090	--- 기타 - 콩(비그나종, 파세러스종)	0		0
07.13.3100	--- 녹두(비그나 멩고(L) 헤파 또는 비그나 라디에 이타(L) 월크잭종)	260.0%	2.51	0
07.13.3200	--- 팥(아주기)(파세러스 또는 비그나 앵구라리스)	260.0%	2.51	0

노르웨이 HS세번	상품 설명	가격에 따른 의무 관세율	별도 의무 관세율	대한민국 양허세율
1	2	3a	3b	4
07.13.3300	-- 강남콩(흰 완두콩을 포함한다)(파세러스 불가리스)	260.0%	2.51	0
07.13.3900	-- 기타	260.0%	2.51	0
	- 렌즈콩			
07.13.4090	-- 기타	0		0
	- 잠두(비시아 파바변종, 메저) 및 말먹이용의 잠두(비시아 파바변종, 에퀴나와 비시아 파바변종,			
07.13.5090	-- 기타	0		0
07.13.9000	- 기타	260.0%	2.51	0
ex 07.14	매니옥, 칩뿌리, 샬렘, 국아, 고구마,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 괴경(자르거나 펠리트 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 냉장, 냉동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및 사고양자의 수			
	- 매니옥(카사바)			
07.14.1090	-- 기타		0.04	0
	- 고구마			
07.14.2090	-- 기타		0.03	0
08.01	코코넛, 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 코코넛			
08.01.1100	-- 말린 것	0		0
08.01.1900	-- 기타	0		0
	- 브라질넛			
08.01.2100	-- 탈각하지 않은 것	0		0
08.01.2200	-- 탈각한 것	0		0
	- 캐슈넛			
08.01.3100	-- 탈각하지 않은 것	0		0
08.01.3200	-- 탈각한 것	0		0
08.02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 아몬드			
08.02.1100	-- 탈각하지 않은 것		0.01	0
08.02.1200	-- 탈각한 것		0.01	0
	- 헤즐넛 또는 필버트(코리루스종)			
08.02.2100	-- 탈각하지 않은 것		0.01	0
08.02.2200	-- 탈각한 것		0.01	0
	- 호도			
08.02.3100	-- 탈각하지 않은 것		0.05	0
08.02.3200	-- 탈각한 것		0.05	0
08.02.4000	- 밤		2,00 H	0
08.02.5000	- 피스타치오		0.24	0
	- 기타			
08.02.9010	-- pekan		0.03	0
	-- 기타			
08.02.9091	---- 잣		0.24	0
08.02.9099	---- 기타		0.24	0
08.03	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노르웨이 HS세번	상품 설명	가격에 따른 의무 관세율	별도 의무 관세율	대한민국 양허세율
1	2	3a	3b	4
08.03.0001	- 신선	0		0
08.03.0002	- 건조	0		0
08.04	대추야자, 무화과, 파인애플, 애버카도우, 과아 버, 망고 및 망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 다)			
08.04.1000	- 대추야자		0.03	0
	- 무화과			
08.04.2010	-- 신선		0.09	0
08.04.2090	-- 기타		0.01	0
08.04.3000	- 파인애플	0		0
08.04.4000	- 애버카도우		0.04	0
	- 과아버, 망고 및 망고스틴			
08.04.5001	-- 과아버		0.04	0
08.04.5002	-- 망고		0.04	0
08.04.5003	-- 망고스틴		0.04	0
ex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오렌지			
08.05.1090	-- 기타		0,40 H	0
	- 맨더린(탄제린 및 세트수머를 포함한다), 클레 멘타인, 월킹 및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08.05.2090	-- 기타		0,40 H	0
	- 그레이프프루트			
08.05.4090	-- 기타		0,40 H	0
	- 레몬(시트리스리몬, 시트리스 리머눔)과 라임 (시트리스 오란티폴리아, 시트리스 라티폴리아)			
	-- 기타			
08.05.5020	---- 레몬	0		0
08.05.5030	---- 라임		0,40 H	0
	- 기타			
08.05.9090	-- 기타		0,40 H	0
08.06	포도(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신선			
	-- 8월1월부터 2월28/29일 까지			
08.06.1011	---- 평지 포도		0,40 H	0
08.06.1019	---- 기타		0,40 H	0
	-- 3월1일부터 7월31일 까지			
08.06.1091	---- 평지 포도		0,20 H	0
08.06.1099	---- 기타		0,20 H	0
08.06.2000	- 건조	0		0
08.07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우(파파야)(신선한 것에 한한다)			
	- 멜론(수박을 포함한다)			
08.07.1100	-- 수박	0		0
08.07.1900	-- 기타	0		0
08.07.2000	- 포포우(파파야)		0.12	0
ex 08.08	사과, 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에 한한다)			
	- 사과			
08.08.1022	-- 12월1일부터 4월30일 까지		0.03	0

노르웨이 HS세번	상품 설명	가격에 따른 의무 관세율	별도 의무 관세율	대한민국 양허세율
1	2	3a	3b	4
	- 배 및 마르멜로			
	--- 배			
08.08.2012	---- 12월1일부터 8월10일 까지		0.02	0
08.08.2060	--- 마르멜로		0.09	0
ex 08.09	살구, 버찌, 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 자두 및 슬로우(신선한 것에 한한다)			
	- 살구			
08.09.1010	--- 5월16일부터 8월15일 까지		0.06	0
08.09.1090	--- 8월16일부터 5월15일 까지		0.24	0
	- 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			
	--- 복숭아			
08.09.3010	---- 5월16일부터 8월15일 까지		0.12	0
08.09.3020	---- 8월16일부터 5월15일 까지		0.24	0
	--- 넥터린			
08.09.3030	---- 5월16일부터 8월15일 까지		0.12	0
08.09.3090	---- 8월16일부터 5월15일 까지		0.24	0
	- 자두와 슬로우			
	--- 자두			
08.09.4010	---- 4월15일부터 6월30일 까지		0.15	0
08.09.4021	---- 7월1일부터 8월20일 까지		0.36	0
08.09.4041	---- 10월11일부터 10월31일 까지		0.72	0
08.09.4051	---- 11월1일부터 4월14일 까지		0.36	0
08.09.4060	--- 슬로우		0.18	0
ex 08.10	기타 과일(신선한 것에 한한다)			
	- 초본류 딸기			
08.10.1011	--- 4월15일부터 6월8일 까지		0.18	0
	--- 6월9일부터 10월31일 까지			
08.10.1025	---- 9월10일부터 10월31일 까지	80.0%	7.21	0
08.10.1030	--- 11월1일부터 3월31일 까지	100.0%	13.29	0
08.10.1040	--- 4월1일부터 4월14일 까지		0.36	0
	-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			
	--- 기타			
08.10.2091	---- 검은나무딸기		0.09	0
08.10.2099	---- 기타		0.09	0
	- 크랜베리, 빌베리와 기타 박시니엄종의 과일			
08.10.4010	--- 카우베리	0		0
	--- 기타			
08.10.4091	---- 크랜베리		0.09	0
08.10.4099	---- 기타		0.09	0
08.10.5000	- 키위프루트		0.06	0
08.10.6000	- 두리언		0.06	0
	- 기타			
08.10.9010	--- 호로딸기	0		0
08.10.9090	--- 기타		0.06	0
ex 08.12	일시 저장처리한 과일과 견과류(이산화유황가스, 염수, 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 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기타			
08.12.9010	--- 감귤류의 과일	0		0

노르웨이 HS세번	상품 설명	가격에 따른 의무 관세율	별도 의무 관세율	대한민국 양허세율
1	2	3a	3b	4
08.12.9020	-- 살구, 복숭아	0		0
08.13	건조한 과실(제0801호 내지 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08.13.1000	- 살구		0.12	0
08.13.2000	- 프룬	0		0
08.13.3000	- 사과	188.0%	4.83	0
	- 기타 과실			
08.13.4001	-- 빌베리	188.0%	4.83	0
08.13.4002	-- 기타 과실	188.0%	4.83	0
	-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08.13.5010	-- 0802호에 해당하는 견과류의 본질적인 구성물		0.02	0
	-- 기타			
08.13.5091	---- 0801호 또는 0801과 0802호에 해당하는 견과류만의 혼합물	188.0%	4.83	0
08.13.5092	과실의 혼합물(0801-0806호에 해당하는 과실의 구성물)	188.0%	4.83	0
08.13.5099	---- 기타 혼합물	188.0%	4.83	0
08.14.0000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 냉동, 건조 또는 염수, 유향수 기타의 저장 용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에 한한다)	0		0
09.03.0000	마태	4.5%		0
09.04	후추(파이퍼속의 것) 및 고추류(건조, 파쇄 또는 분쇄한 캡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 후추			
09.04.1100	--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것	0		0
09.04.1200	-- 파쇄 또는 분쇄한 것	0		0
09.04.2000	- 고추류(건조, 파쇄 또는 분쇄한 캡시컴속 피멘타속의 열매)	0		0
09.05.0000	바닐라두	0		0
09.06	계피와 계피나무 꽃			
09.06.1000	-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것	0		0
09.06.2000	- 파쇄 또는 분쇄한 것	0		0
09.07.0000	정향(과실, 꽃 및 화경에 한한다)	0		0
09.08	육두구, 메이스 및 소두구			
09.08.1000	- 육두구	0		0
09.08.2000	- 메이스	0		0
09.08.3000	- 소두구(백두구)	0		0
09.09	아니스, 대회향, 회향, 코리앤드, 커민 또는 캐러웨이의 씨와 주니퍼의 열매			
09.09.1000	- 아니스 또는 대회향의 씨		0.10	0
09.09.2000	- 코리앤더 씨		0.10	0
09.09.3000	- 커민의 씨		0.10	0
09.09.4000	- 캐러웨이씨		0.10	0

노르웨이 HS세번	상품 설명	가격에 따른 의무 관세율	별도 의무 관세율	대한민국 양허세율
1	2	3a	3b	4
	- 회향의 씨와 주니퍼의 열매			
09.09.5010	-- 회향		0.10	0
09.09.5020	-- 주니퍼의 열매		0.04	0
09.10	생강, 샤프란, 심황(강황), 타임, 월계수의 잎, 카 레 및 기타 향신료			
09.10.1000	- 생강	0		0
09.10.2000	- 샤프란	0		0
09.10.3000	- 심황(강황)		0.15	0
09.10.4000	- 타임, 월계수의 잎	0		0
09.10.5000	- 카레	0		0
	- 기타 향신료			
09.10.9100	-- 혼합물(제9류 주1 "나"에 규정한 것)		0.15	0
	-- 기타 향신료			
09.10.9910	---- 월계수 열매와 셀러리의 씨	0		0
09.10.9990	---- 기타		0.15	0
ex 10.05	옥수수			
10.05.1000	- 종자용	0		0
	- 기타			
10.05.9090	- 기타	0		0
ex 10.06	쌀(벼를 포함한다)			
	- 벼			
10.06.1090	-- 기타	0		0
	- 메현미			
10.06.2090	-- 기타	0		0
	- 정미(연마, 광택 여부를 불문한다)			
10.06.3010	-- 식용		0.12	0
10.06.3099	-- 기타		0.04	0
	- 설패미			
10.06.4010	-- 식용		0.12	0
10.06.4099	-- 기타		0.04	0
ex 10.07	수수			
10.07.0090	- 기타	0		0
ex 10.08	메밀, 조 또는 카나리시드 및 기타 곡물			
	- 메밀			
10.08.1090	-- 기타	0		0
	- 밀리트			
10.08.2090	-- 기타	0		0
	- 카나리시드			
10.08.3090	-- 기타		0.09	0
ex 11.02	곡물(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한다)			
	- 옥수수가루			
11.02.2090	-- 기타	0		0
	- 쌀가루			
11.02.3090	-- 기타	0		0
	- 기타			
	-- 메밀가루			
11.02.9002	---- 기타	370.0%	3.30	0

노르웨이 HS세번	상품 설명	가격에 따른 의무 관세율	별도 의무 관세율	대한민국 양허세율
1	2	3a	3b	4
ex 11.03	곡물의 분쇄물, 조분 및 펠리트 - 분쇄물 및 조분 -- 옥수수의 것			
11.03.1390	---- 기타 -- 기타 곡물의 것	0		0
11.03.1920	---- 쌀의 것 ---- 기타	0		0
ex 11.04	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것(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 기타 가공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 -- 옥수수의 것			
11.04.2390	---- 기타 -- 기타 곡물의 것	0		0
11.04.2902	---- 메밀의 것 ---- 기타	338.0%	3.50	0
11.04.2904	---- 밀리트의 것 ---- 기타	338.0%	3.50	0
ex 11.06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교, 뿌리 또는 괴경(제0714호의 것)과 제8류 물품의 분, 조분과 분말 - 건조한 채두류의 것(제0713호의 것)			
11.06.1090	-- 기타		0.06	0
11.06.3090	- 제8류 물품의 것 -- 기타		0.04	0
ex 11.07	맥아(볶은 것인지의 여부를 분문한다) - 볶지 아니한 것			
11.07.1090	-- 기타	0		0
11.07.2090	- 볶은 것 -- 기타	0		0
ex 11.09	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분문한다) - 기타	1.5%		0
11.09.0090				
ex 12.01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분문한다) - 기타	0		0
12.01.0090				
ex 12.02	낙화생(볶거나 기타 조리를 한 것을 제외하며, 탈각 또는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탈각하지 아니한 것			
12.02.1090	-- 기타	0		0
12.02.2090	- 탈각한 것(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분문한다) -- 기타	0		0
ex 12.03	코프라 - 기타	0		0
12.03.0090				

노르웨이 HS세번	상품 설명	가격에 따른 의무 관세율	별도 의무 관세율	대한민국 양허세율
1	2	3a	3b	4
ex 12.04 12.04.0090	아마인(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기타	0		0
ex 12.05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저에루크산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			
12.05.1090	-- 기타	0		0
12.05.9090	-- 기타	0		0
ex 12.06 12.06.0090	해바라기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기타	0		ㄷ
ex 12.07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팥과 핵			
12.07.1090	-- 기타	0		0
12.07.2090	-- 기타	0		0
12.07.3090	-- 기타	0		0
12.07.4090	-- 기타	0		0
12.07.5090	-- 기타		0.08	0
12.07.6090	-- 기타	0		0
12.07.9190	---- 기타	0		0
12.07.9990	---- 기타	0		0
ex 12.08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겨자의 분과 조분을 제외한다) - 대두의 것			
12.08.1090	-- 기타	0		0
12.08.9090	-- 기타	0		0
ex 12.09	파종용의 종자, 과실 및 포자			
12.09.1000	- 사탕무 종자		0.72	0
12.09.3000	- 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 - 기타	0		0
12.09.9110	---- 오이, 꽃양배추, 당근, 양파, 쪽파, 리크, 파슬리, 엔다이브 및 상추 종자 ---- 기타		0.18	0
12.09.9191	----- 양배추 종자		0.72	0
12.09.9199	----- 기타		0.72	0
12.09.9900	-- 기타	0		0

노르웨이 HS세번	상품 설명	가격에 따른 의무 관세율	별도 의무 관세율	대한민국 양허세율
1	2	3a	3b	4
12.10	호프(신선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 분말상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분문한다)와 루플린			
12.10.1000	- 호프(분쇄한것, 분상 또는 펠리트 상의 것을 제외한다) - 호프(분쇄한 것, 분상 또는 펠리트 상의 것에 한한다)와 루플린		0.08	0
12.10.2001	-- 호프(분쇄한 것, 분상 또는 펠리트 상의 것에 한한다)	4.5%		0
12.10.2002	-- 루플린	4.5%		0
12.11	주로 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기타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 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11.1000	- 감초	0		0
12.11.2000	- 인삼	0		0
12.11.3000	- 코카잎	0		0
12.11.4000	- 양귀비줄기	0		0
12.11.9009	- 기타	0		0
ex 12.12	로우커스트두, 해초류와 기타 조류,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 냉장, 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아니한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 변종의 치커리 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2.12.1090	- 로우커스트두(로우커스트두의 씨를 포함한다) -- 기타	0		0
12.12.2090	- 해초류와 기타 조류 -- 기타	0		0
12.12.3000	- 살구, 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 또는 자두의 - 기타	0		0
12.12.9190	-- 사탕무 ---- 기타	0		0
12.12.9990	-- 기타 ---- 기타	0		0
13.01	락과 천연검, 수지, 검수지 및 울레오레진(예 : 발삼)			
13.01.1000	- 락	0		0
13.01.2000	- 아라비아 검	0		0
13.01.9000	- 기타	0		0
ex 13.02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업과 펙틴산업,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분문한다)			
13.02.1100	- 식물성 수액과 엑스 -- 아편	4.5%		0

노르웨이 HS세번	상품 설명	가격에 따른 의무 관세율	별도 의무 관세율	대한민국 양허세율
1	2	3a	3b	4
ex 15.02	소, 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제1503호의 것을 제외한다) - 기타			
15.02.0020	-- 우지		0.01	0
15.02.0099	-- 기타		0.05	0
15.03.0000	라드스테아린, 라드유, 올레오스테아린, 올레오유, 텔로우유로서 유화, 혼합 기타의 조제를 하지 아니한 것		0.01	0
15.05.0000	울그리스와 이로부터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을 포함한다)		0.02	0
ex 15.06	기타의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06.0021	- 우골유와 우각유 -- 기타		0.05	0
15.06.0099	--- 기타		0.02	0
ex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조유(검질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5.07.1090	-- 기타		0.03	0
ex 15.08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조유			
15.08.1090	-- 기타		0.03	0
ex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버어진			
15.09.1090	-- 기타	0		0
15.09.9090	-- 기타	0		0
ex 15.10	기타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하고, 이들의 유 또는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유 또는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 기타			
15.10.0090	- 기타	0		0
ex 15.11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조유			
15.11.1090	-- 기타	0		0
15.11.9099	--- 기타	0		0

노르웨이 HS세번	상품 설명	가격에 따른 의무 관세율	별도 의무 관세율	대한민국 양허세율
1	2	3a	3b	4
ex 15.12	해바라기씨유, 잇꽃유 또는 면실유 및 그 분획물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해바라기씨유 또는 잇꽃유와 그 분획물 -- 조유 --- 기타		0.05	0
15.12.1190	- 면실유와 그 분획물 -- 조유(고시꼴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기타		0.05	0
15.12.2190			0.05	0
ex 15.13	야자유,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정제 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야자유와 그 분획물 -- 조유 --- 기타		0.03	0
15.13.1190	-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 -- 조유 --- 기타		0.03	0
15.13.2190			0.03	0
ex 15.14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또는 겨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저에루크산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와 그 분획물 -- 조유 --- 기타		0.05	0
15.14.1190	- 기타 -- 조유 --- 기타		0.05	0
15.14.9190			0.05	0
ex 15.15	기타 비취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버유를 포함하 다)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 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아마인유와 그 분획물 -- 조유 --- 기타		0.05	0
15.15.1190	-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 조유 --- 기타		0.05	0
15.15.2190	-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 기타	0	0.05	0
15.15.3090	- 동유와 그 분획물 -- 기타	0	0.05	0
15.15.4090	- 참기름과 그 분획물 -- 기타	0	0.05	0
15.15.5020	--- 조유 - 기타		0.05	0
15.15.9021	--- 캐슈넛껍질유(사료용이 아닌것), 나무기름(동 유를 제외한 것), 오이티시카유(사료용이 아닌것)	0	0.05	0
15.15.9032	--- 호호버유와 그 분획물(사료용이 아닌것) -- 기타	0	0.05	0

노르웨이 HS세번	상품 설명	가격에 따른 의무 관세율	별도 의무 관세율	대한민국 양허세율
1	2	3a	3b	4
15.15.9070	---- 조유		0.03	0
ex 15.16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테르화한 것, 리에스테르화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 기타			
15.16.2099	---- 기타	14.4%		20%
ex. 15.17	마가린 및 이 류의 동, 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 - 기타 -- 기타 --- 기타			
15.17.9098	---- 기타		0.02	0
ex. 15.18	동물성 또는 식품성 유지와 그 분획물(끓이거나 산화, 탈수, 황화, 취입, 진공 또는 불활성 가스하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기타 화학적 변성을 한 것에 한하며, 제1516호의 해당품을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 또는 이 류의 다른 유지의 분획물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 기타			
15.18.0021	-- 동유와 기타 이와 유사한 나무유, 오이티시카	0		0
15.18.0031	-- 건조촉진유		0.08	0
15.18.0041	-- 끓인 아마인유		0.07	0
ex 16.03	육,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 - 기타 -- 기타			
16.03.0099	---- 기타	344.0%	137.96	10%
ex 17.01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상태인 것에 한한다) - 조당(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사탕수수당 --- 기타 -- 사탕무당 --- 기타 - 기타 --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것 --- 기타 -- 기타 --- 기타			
17.01.1190	---- 기타		0.03	0
17.01.1290	---- 기타		0.03	0
17.01.9190	---- 기타		0.03	0
17.01.9991	----- 덩어리 또는 가루 ----- 기타 당류		0.03	0

노르웨이 HS세번	상품 설명	가격에 따른 의무 관세율	별도 의무 관세율	대한민국 양허세율
1	2	3a	3b	4
17.01.9995	----- 소매용으로 무게가 24kg을 초과하지 않는 것		0.03	0
17.01.9999	----- 기타(벌크 또는 도매용 포장)		0.03	0
ex 17.02	기타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 맥아당, 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에 한한다), 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캐러멜당 - 유당과 유당시럽 -- 건조상태에서 측정된 유당(무수유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이상인 것			
17.02.1190	---- 기타	0		0
17.02.1990	---- 기타	0		0
17.02.2090	-- 기타	0		0
17.02.6090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만 전화당을 제외한다 -- 기타	0		0
ex 17.03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시에 생긴 것에 한한다) -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			
17.03.1090	-- 기타	0		0
17.03.9090	-- 기타	0		0
18.01.0000	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0		0
18.02.0000	코코아의 각, 피와 기타 코코아 웨이스트	0		0
ex 20.01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과일,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 기타 -- 채소류			
20.01.9010	---- 케이퍼		0.60	0
20.01.9020	---- 올리브		0.30	0
20.01.9061	---- 단고추(캐프시컴 에뉴엄 변종, 에뉴엄)	223.0%	12.92	0
20.01.9069	---- 기타	223.0%	12.92	10%
ex 20.02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토마토(원상 또는 조각상)			
20.02.1009	-- 기타	151.0%	12.97	0
20.03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버섯과 송로(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20.03.1002	-- 재배된 것		0.60	0
20.03.1008	-- 기타		0.60	0

노르웨이 HS세번	상품 설명	가격에 따른 의무 관세율	별도 의무 관세율	대한민국 양허세율
1	2	3a	3b	4
20.03.2000	- 송로 - 기타		0.06	0
20.03.9001	-- 재배된 것		0.60	0
20.03.9009	-- 기타		0.60	0
ex 20.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 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며, 냉동한 것에 한하고,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기타 채소 및 채소의 혼합물 -- 기타			
20.04.9091	---- 구상의 양영경귀	288.0%	34.92	0
ex. 20.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 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며, 냉동하지 아니한 것 에 한하고,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완두(피섬 새티범)			
20.05.4001	-- 건조한 것	181.0%	11.77	0
20.05.5100	- 콩(비그나종, 파세러스종) -- 탈각한 콩 -- 기타	606.0%	38.01	0
20.05.5901	---- 녹두, 아스파라거스콩, 왁스빈(강낭콩), 스트링빈(강낭콩)	249.0%	15.64	10%
20.05.5909	---- 기타	249.0%	15.64	0
20.05.6000	- 아스파라거스		0.06	0
20.05.7000	- 올리브 - 기타 채소(채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0.60	0
20.05.9001	-- 케이퍼	288.0%	34.92	0
20.05.9002	-- 구상의 양영경귀	288.0%	34.92	0
20.05.9003	-- 단고추(캐프시컴 에뉴엄 변종, 에뉴엄)	288.0%	34.92	0
20.05.9004	-- 죽순	288.0%	34.92	0
20.05.9009	- 기타(채소의 혼합물을 포함)	288.0%	34.92	10%
ex. 20.06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 과일, 견과류, 과피 및 식물의 기타 부분(드레인한 것, 설탕을 입히거 나 설탕에 절인 것)			
20.06.0010	- 생강 - 기타 제품	102.0%	14.96	0
20.06.0039	-- 설탕 함유량이 전중량의 13%를 초과하는 것 ---- 기타	102.0%	14.96	0
ex. 20.08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일, 견 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 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견과류, 낙화생 기타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0.08.1900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386.0%	2.11	80%
20.08.2000	- 파인애플 - 감귤류 과일 -- 기타	0		0
20.08.3091	---- 맨더린		0.18	0
20.08.3099	---- 기타		0.18	0
20.08.4000	- 배	86.0%	8.34	0

노르웨이 HS세번	상품 설명	가격에 따른 의무 관세율	별도 의무 관세율	대한민국 양허세율
1	2	3a	3b	4
20.08.5000	- 살구		0.05	0
20.08.7000	- 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		0.05	0
	-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나 제2008.19호의 혼합물을 제외한다)			
	-- 혼합물			
20.08.9201	---- 제0803-0810호의 과일이 완전하게 포함된 것	288.0%	34.92	0
	-- 기타			
20.08.9902	---- 자두	288.0%	34.92	0
20.08.9909	---- 기타	288.0%	34.92	10%
ex 20.09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하며,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오렌지주스			
	-- 냉동한 것			
	----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			
20.09.1111	----- 브릭스 값이 67을 초과하는 것		0.23	0
20.09.1119	----- 기타		0.23	0
	---- 기타			
20.09.1120	----- 내용물을 포함해서 3kg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0		0
	---- 기타			
20.09.1130	----- 농축된 것	0		0
	---- 기타			
20.09.1191	----- 브릭스 값이 67을 초과하는 것		0.08	0
20.09.1199	----- 기타		0.08	0
	--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20.09.1210	----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		0.23	0
20.09.1220	기타(내용물을 포함해서 3kg 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0		0
20.09.1290	---- 기타		0.08	0
	-- 기타			
	----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			
20.09.1912	----- 브릭스 값이 67을 초과하는 것		0.23	0
20.09.1919	----- 기타		0.23	0
	---- 기타			
20.09.1920	----- 내용물을 포함해서 3kg 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0		0
	---- 기타			
20.09.1992	----- 브릭스 값이 67을 초과하는 것		0.08	0
20.09.1999	----- 기타		0.08	0
	- 그레이프프루트주스			
20.09.2100	--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0		0
20.09.2900	-- 기타	0		0
	- 기타 단일의 감귤류 주스			
	--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20.09.3110	---- 내용물을 포함해서 3kg 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0		0
	---- 기타			
20.09.3191	----- 설탕을 첨가한 것		0.15	0
20.09.3199	----- 기타		0.15	0
	-- 기타			
20.09.3910	---- 내용물을 포함해서 3kg 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0		0
	---- 기타			
20.09.3991	----- 설탕을 첨가한 것		0.15	0
20.09.3999	----- 기타		0.15	0

노르웨이 HS세번	상품 설명	가격에 따른 의무 관세율	별도 의무 관세율	대한민국 양허세율
1	2	3a	3b	4
	- 파인애플주스			
20.09.4110	--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20.09.4190	---- 내용물을 포함해서 3kg 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0		0
	---- 기타		0.10	0
	-- 기타			
20.09.4910	---- 내용물을 포함해서 3kg 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0		0
20.09.4990	---- 기타		0.10	0
20.09.5000	- 토마토주스		0.15	0
	- 포도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			
20.09.6100	-- 브릭스 값이 30을 초과하지 않는 것		0.15	0
20.09.6900	-- 기타		0.15	0
	- 사과주스			
20.09.7100	--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340.0%	27.20	10%
20.09.7900	-- 기타	340.0%	27.20	10%
	- 기타 단일의 과실 또는 채소의 주스			
	-- 기타			
20.09.8092	---- 딸기주스	340.0%	27.20	10%
20.09.8099	---- 기타	340.0%	27.20	10%
	- 혼합주스			
20.09.9001	-- 나무딸기, 사과, 검은 커런트, 붉은 커런트, 흰 커런트주스를 제외한 혼합주스	340.0%	27.20	10%
20.09.9009	-- 기타 혼합물	340.0%	27.20	10%
22.04	포도주(생포도주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알콜로 강화시킨 포도주를 포함한다) 및 포도즙(제2009호의 것을 제외한다)			
	- 발포성 포도주			
22.04.1001	-- 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	0		0
22.04.1009	-- 기타	0		0
	- 기타 포도주와 포도즙(알콜첨가에 의하여 발효를 중지한 것에 한한다)			
	--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22.04.2101	---- 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	0		0
22.04.2109	---- 기타	0		0
	-- 기타			
22.04.2901	---- 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	0		0
22.04.2909	---- 기타	0		0
	- 기타 포도즙			
	-- 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			
22.04.3002	---- 알콜을 첨가하는 것 이외에는 발효를 중지시키지 못하는 것	0		0
22.04.3003	---- 기타	0		0
	-- 기타			
22.04.3004	---- 알콜을 첨가하는 것 이외에는 발효를 중지시키지 못하는 것	0		0
22.04.3009	---- 기타	0		0
22.06	기타 발효주(예 : 사과술, 배술, 미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발효주의 혼합물 및 발효주와 비알콜성 음료와의 혼합물			
22.06.0002	- 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0.5%를 초과하나 0.7%를 초과하지 않는것	0		0

노르웨이 HS세번	상품 설명	가격에 따른 의무 관세율	별도 의무 관세율	대한민국 양허세율
1	2	3a	3b	4
22.06.0003	- 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0.7%를 초과하나 2.5%를 초과하지 않는것	0		0
22.06.0009	- 기타	0		0
ex. 22.07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용량 의 100분의 80이상인 것에 한한다) 및 변성에틸 알콜과 기타 변성주정(알콜의 용량을 불문한다) -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용 량의 100분의 80이상인 것에 한한다)			
22.07.1090	-- 기타	0		0
ex 23.02	밀기울, 미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펠리트상 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곡물 또는 채두류 의 선별, 제분 기타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에 한한다) - 옥수수의 것			
23.02.1090	-- 기타	0		0
23.02.2090	- 쌀의 것 -- 기타	0		0
23.02.5090	- 채두류의 것 -- 기타	0		0
ex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비트펄프, 버개스 및 기타 설탕 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및 양조 또 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리트상의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23.03.1090	-- 기타	0		0
23.03.2090	- 비트펄프, 버개스 기타 설탕제조시에 생기는 웨 이스트 -- 기타	0		0
23.03.3090	-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 기타	0		0
ex 23.04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 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3.04.0090	- 기타	0		0
ex 23.05	낙화생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3.05.0090	- 기타	0		0
ex 23.06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 2304호 또는 2305호의 것을 제외한 식물성 유지 의 추출시에 생기는 것에 한한다) - 면실의 것			
23.06.1090	-- 기타	0		0
23.06.2090	- 아마인의 것 -- 기타	0		0
23.06.3090	- 해바라기씨의 것 -- 기타	0		0

노르웨이 HS세번	상품 설명	가격에 따른 의무 관세율	별도 의무 관세율	대한민국 양허세율
1	2	3a	3b	4
	-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의 것			
23.06.4190	--- 저 에루크산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의 것	0		0
	---- 기타			
23.06.4990	---- 기타	0		0
	- 야자 또는 코프라의 것			
23.06.5090	--- 기타	0		0
	- 팜넛 또는 핵의 것			
23.06.6090	--- 기타	0		0
	- 옥수수 배의 것			
23.06.7090	--- 기타	0		0
	- 기타			
23.06.9090	--- 기타	0		0
ex 23.07	포도주박과 생주석			
23.07.0090	- 기타	0		0
ex 23.09	사료용 조제품			
	-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것에 한한다)			
	--- 기타			
23.09.1091	---- 개 사료	0		0
23.09.1092	---- 고양이 사료	0		0
	- 기타			
	--- 기타			
	---- 어류용 사료			
23.09.9030	---- 관상어용의 것	0		0
	---- 조류용 사료			
23.09.9050	---- 애완용의 것	0		0
	---- 기타			
23.09.9080	---- 애완용의 것	0		0
24.01	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			
24.01.1000	- 잎담배(주맥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0		0
24.01.2000	- 잎담배(주맥을 일부 또는 전부 제거한 것)	0		0
24.01.3000	- 담배 부산물	0		0
24.02	시가, 셔루트, 시가릴로 및 권련(담배 또는 담배 대용물의 것에 한한다)			
	- 시가, 셔루트, 시가릴로(담배를 함유한 것에 한 한다)			
24.02.1001	--- 시가		12.75	0
24.02.1009	--- 기타		12.75	0
24.02.2000	- 권련(담배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		14.45	0
24.02.9000	- 기타		12.75	0
24.03	기타 제조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및 담배엑스와 에센스			
24.03.1000	- 흡연용 담배(담배대용물의 포함비율을 불문한다)		7.65	0
	- 기타			
24.03.9100	---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7.65	0
	--- 기타			
24.03.9910	----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	0		0
24.03.9990	---- 기타		7.65	0